

임원 선임 보고

문서번호 경영2018-209

2018. 12.07.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자산운용제도실 담당자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임원 선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각 1부. 끝.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 형



작 성 자 : 이길의(경영지원실장)

전화번호 : 02-3472-2075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자격요건 확인결과 ³⁾
부사장 (상임,비등기)	김종민 (金種旻)	661201	2018.12.03. (2018.12.03. 1회)	-	투자운용업무	現마스틴투자운용 해외부문 대표	없음	적정
상무 (상임,비등기)	조용민 (趙容敏)	740304	2018.12.03. (2018.12.03. 1회)	-	투자운용업무	現마스틴투자운용 해외투자운용1본부장	없음	적정

-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비고
대표이사 (상임,등기)	김대형 (金大衡)	620129	2016.03.25. (2010.09.03. 3회)	2019.03.24	現마스턴투자운용(주) 대표이사	없음	
전무 (상임,등기)	이상도 (李相道)	700520	2017.03.08. (2011.11.15 3회)	2020.03.07	現마스턴투자운용(주) 투자운용1본부장	없음	
사외이사 (비상임,등기)	전병하 (田炳夏)	640215	2016.03.25. (2010.09.03. 3회)	2019.03.24	現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감사 (비상임,등기)	김병익 (金炳翼)	630819	2016.03.25. (2010.09.03. 3회)	2019.03.24	現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상무 (상임,등기)	홍성혁 (洪成赫)	720920	2017.09.27. (2017.09.27. 1회)	2020.09.26	現마스턴투자운용(주) 투자운용2본부장	없음	집행임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변경
전무 (상임,등기)	이재길 (李裁吉)	711011	2017.09.27. (2017.09.27. 1회)	2020.09.26	現마스턴투자운용(주) 대체투자운용1본부장	없음	집행임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변경
상무 (상임,비등기)	고성관 (高成官)	730911	2017.09.01. (2017.09.01. 1회)	-	現마스턴투자운용(주) 대체투자운용2본부장	없음	
전무 (상임,비등기)	정호석 (鄭鎬碩)	640814	2017.09.01. (2017.09.01. 1회)	-	現마스턴투자운용(주) 투자개발1본부장	없음	
상무 (상임,비등기)	한재혁 (韓載赫)	720528	2017.09.01. (2017.09.01. 1회)	-	現마스턴투자운용(주) 투자개발2본부장	없음	
상무 (상임,비등기)	이길의 (李吉儀)	681001	2017.09.01. (2017.09.01. 1회)	-	現마스턴투자운용(주) 경영지원실장	없음	
부사장 (상임,비등기)	김종민 (金種旻)	661201	2018.12.03. (2018.12.03. 1회)		現마스턴투자운용 해외부문 대표	없음	
상무 (상임,비등기)	조용민 (趙容敏)	740304	2018.12.03. (2018.12.03. 1회)		現마스턴투자운용 해외투자운용1본부장	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이 사 회 의 사 록

2018. 11. 28. 오전 09시 30분 본점 중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5 명	출석 이사 수	5 명
감사총수	1 명	출석 감사 수	1 명

대표이사 김대형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는 직법하게 성립됨을 말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제1호 의안 : 준법감시인 변경 승인의 건

의장은 현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중인 김승용이 준법감시인직을 사임할 것을 알리다. 이에 후임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전원 후임자 선임에 임한바 참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 사람이 준법감시인에 선임되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준법감시인 심재훈

1. 의결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 제1항의 4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2. 자격요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1의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3. 자격사항 상세

자격	상세	비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면허 취득	
해당 자격 관련 경력 5년 이상	우리은행 준법지원부 조사역 근무 (2010년 ~ 2018년)	

4. 변경기준일 : 2018년 12월 3일

보고안건 :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및 보고의 건

(해외부문 대표 김종민 부사장, 해외투자운용1본부장 조용민 상무)

의장은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안 전부를 심의종료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10시 30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전원이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첨부 : 선임인의 변호사등록증, 공인회계사합격증, 경력(재직)증명서, 결격사유조회회부서

2018. 11. 28.

마스틴투자운용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김 대 형 (인)
	사내이사	이 상 도 (인)
	사내이사	이 재 길 (인)
	사내이사	홍 성 혁 (인)
	사외이사	전 병 하 (인)
감 사	김 병 익 (인)	



이 력 서

성 명 김 종 민 (金 種 旻)

생년월일 1966년 12월 1일

현 주 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7동 102호

등 록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42번지
기 준 지



학 력 및 경 력

■ 학력사항

1992년 2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졸업
2005년 5월	뉴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 금융 졸업

■ 경력사항

2005년 6월	~	2006년 5월	Miller Cicero LLC
2006년 6월	~	2007년 4월	JM United Appraisal.co
2007년 5월	~	2008년 8월	K&S Real Estate Development
2008년10월	~	2015년 2월	CBRE Korea
2015년 4월	~	2017년 3월	시몬즈자산운용
2017년10월	~	현재	마스턴투자운용 해외부문 대표

2018 년 11월 26일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김 종 민 (인)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김종민	직 위	부사장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김종민	직 위	부사장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종민	직위	부사장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종합의견

법령에서 정한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며, 특별한 격결사유 없음

2018년 11월 26일

마스틴투자운용 주식회사 부사장 김 종 민 (인)

마스틴투자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 형 (인)



『시민이 좋아합니다 하남이 좋아집니다』



하 남 시



수신 마스턴투자운용주식회사 귀하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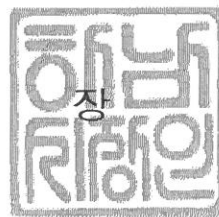
제목 결격사유 조회결과 회신(김종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스턴투자운용주식회사 경영18-203(2018.11.26.)호와 관련 결격사유조회 요청 건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조회결과를 회신합니다.

-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 ▶ 접수 시 비공개설정 능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 끝.

하 남 시



가족관계등록 전결 2018. 11. 26.

팀장 곽정란

협조자

시행 민원여권과-10919 (2018. 11. 26.) 접수

우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http://www.hanam.go.kr>

전화번호 031)790-5104

팩스번호 031)790-6139

/ daisy9@korea.kr

/ 비공개(6)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 마스틴투자운용주식회사(2018.11.26)에서 조회 요청한 아래자의 결격사유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회신내용

성명	김종민	주민번호	661201-*****
등록기준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42번지		
결격사유 기록유무 (수형/선고/후견)	없음		
확인내용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곽정란 전화번호:031-790-5104)

경기도 하남시장

재직(경력)증명서

성명	김종민	주민등록번호	6612011
주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 APT 7동 102호		
직책	이사	부서	Capital Markets
재직기간	13-10-2008 To 28-02-2015		
담당업무	부동산 투자자문		
용도	기관 제출용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6/11/2018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스탠다드차타드은행빌딩 21층

회사명: 씨비알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벤자민마크던칸



징계내역 확인서

당사에서의 징계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재직기간 중 징계여 부
김종민	이사	661201-1	2008-10-13 ~ 2015-02-28	없음

조치기관 : 해당사항 없음

징계일 : 해당사항 없음

징계사유 : 해당사항 없음

징계처분 : 해당사항 없음

2018 년 11 월 27 일

씨비알이코리아 주식회사 (인)



경력증명서

성 명	김종민	직 위	이사
주민등록번호	661201-1*****	입 사 일	2015/04/06
용 도	경력확인용	재 직 기 간	2015/04/06 - 2017/03/31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APT 7동 102호		

위 사실과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시몬즈자산운용 대표이사



징계사실여부확인서

아래 대상자에 대한 당사의 징계사실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징계사실 여부 확인 대상자

성명 : 김종민

최종직위 : 이사

근무기간 : 2015/04/06 - 2017/03/31

● 징계사실 조회기간 : **2015/04/06 - 2017/03/31**

조회기간 중 징계내역	해당 사항 없음
-------------	----------

2018년 11월 27일

시몬즈자산운용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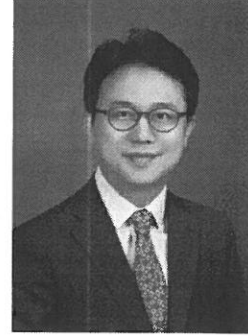
이 력 서

성 명 조 용 민(趙 容 敏)

생년월일 1974년 3월 4일

현 주 소 서초구 잠원로 60 신반포자이아파트
102동 1402호

등 록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기 준 지



학 력 및 경 력

■ 학력사항

1997년 2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졸업
2001년 5월	뉴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 금융 졸업
2011년 2월	건국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졸업

■ 경력사항

1996년12월	~	2000년 3월	월드건설
2003년 7월	~	2008년 3월	삼성생명
2012년 1월	~	2013년 2월	코오롱건설
2013년 4월	~	2015년 7월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2015년 7월	~	2018년 9월	현대인베스트먼트
2018년10월	~	현재	마스턴투자운용 해외투자운용1본부장

2018 년 11월 26일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조 용 민 (인)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조용민	직 위	상 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조용민	직 위	상 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조용민	직 위	상 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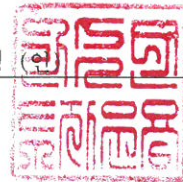
중 합 의 건

법령에서 정한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며, 특별한 격결사유 없음

2018년 11월 26일

마스틴투자운용 주식회사 상무 조 용 민 (인)

마스틴투자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 형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사 곡 면



수신 마스틴투자운용주식회사
(경유)

제목 결격사유조회 회보(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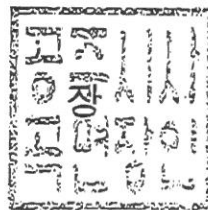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영- 18 -204(2018.11.26.)호와 관련 결격사유 기록사항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보서(조용*) 1부 끝.

사 곡 면



쪽지인원팀장 김영옥

부면장

조철희

사곡면장

2018. 11. 27.
이성열

협조자

시행 사곡면-12386

(2018. 11. 27.)

접수

우 3252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3, (사곡면사무소) / <http://www.gongju.go.kr>

전화번호 041-840-2866 팩스번호 041-840-2374 / kyo7343@korea.kr / 비공개(6)

소중한 개인정보 나무터 지킵시다.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 마스틴투자운용주식회사(2018.11.26)에서 조회 요청한 아래자의 결격사유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회신내용

성 명	조용민	주 민 번 호	740304-*****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8		
결격사유 기록유무 (수형/선고/후견)	없음		
확 인 내 용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김영옥 전화번호:041840286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장

경력증명서

발급 번호 제 18-174 호

성명	(한글) 조용민 (한문) 趙容敏	주민번호	740304-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85 101동 102호(잠원동, 블루힐하우스)		
소속	글로벌대체투자1팀	직책	팀장
		직위	수석
재직기간	2015년 7월 6일 부터 ~ 2018년 9월 28일 까지 (3년 2개월 23일간)		
용도	경력확인	용도와 사용시 무효	

경력사항

1. 2015.07.06 글로벌대체투자팀 부장 입사
2. 2017.01.01 글로벌대체운용팀 부서이동 및 직급변경
3. 2017.12.26 글로벌대체투자팀 부서이동
4. 2018.04.01 글로벌대체투자1팀 부서이동
5. 2018.09.28 글로벌대체투자1팀 수석 퇴사

상기 사항을 증명함.

2018년 11월 28일

H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영철



징계내역확인서

발급 번호 제 18-175 호

성명	(한글) 조용민 (한문) 趙容敏	주민번호	740304-1
소속	글로벌대체투자1팀	직책	팀장
		직위	수석
재직기간	2015년 7월 6일 부터 ~ 2018년 9월 28일 까지 (3년 2개월 23일간)		
재직기간중 징계내역			
조치기관 : 해당사항 없음			
징계일 : 해당사항 없음			
징계사유 : 해당사항 없음			
징계처분 : 해당사항 없음			

상기 사항을 증명함.

2018년 11월 28일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영철



HR 제 779 호

경 력 증 명 서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60, 102동 1402호 (잠원동, 신반포 자이아파트)

성 명 : 조용민

생년월일 : 1974.03.04

제 출 처 : 금융감독원

비 고 : -

경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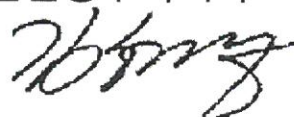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특별자산팀	이사(팀장)	2013.03.04 ~ 2013.05.13
대체투자팀	이사(팀장)	2013.05.13 ~ 2013.11.01
실물자산본부	이사(팀장)	2013.11.01 ~ 2015.01.12
실물자산본부	이사(본부장)	2013.11.01 ~ 2015.01.12
법인영업팀	이사	2015.01.12 ~ 2015.07.06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함

2018년 11월 28일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인사본부장 김혜경



징계내역 확인서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여부
조용민	1974. 03. 04.	2013. 03. 04. ~ 2015. 07. 06.	해당사항 없음

* 당사 인사관리 규정 제 86조에 따라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말소한다. (1. 정직: 5년 / 2. 감봉: 3년 / 2. 주의/견책: 2년)

징계처분: 해당사항 없음

징계일: 해당사항 없음

징계사유: 해당사항 없음

2018년 11월 27일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중

